

서울특별시 마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동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9
---------	-------

발의년월일 : 2016. 8. 22 .

발 의 자 : 이동주, 강희향,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백남환, 송병길, 서종수,
이봉수,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차재홍, 허정행

1. 제안이유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가 발생 할 시 주변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바 우리구 거주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필요한 구민에게 심폐소생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응급 상황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 및 교육(안 제4조~제5조)
- 라. 심폐소생술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안 제6조)
- 마. 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및 사후관리(안 제7조~제8조)

3. 관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4. 조례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입법예고 : 2016. 8. 22. ~ 8. 26.(제출된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③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이 많은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 2016년 예산내역 (31,000천원)

- ▶ 구비 11,000천원
 - 초중고등학생 교육 강사료 : 80,000원 * 130학급
 - 일반인 교육 강사료 : 600,000원
- ▶ 보조 20,000천원(국비50%,시비50%)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강사료 : 20,000천원

- 전문교육기관 강사료 현황

전문교육기관	강사 인원	강사료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주로 초중고등학교 대상 교육 의뢰)	1인	공공기관, 학교 : 시간당 10만원 기업체 : 시간당 20만원 ※ 2016.10.1일 부터 강사료 인상 (기존 강사료: 2시간 6만원)
LSK(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2~3인	2시간 35만원

- 추가소요예산 : 19,100천원

▶ 산출기준

-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강사료 인상분
: 120,000원 * 130학급 = 15,600천원
- 마포구 소속 공무원 교육 강사료
: 350,000원 * 10회 = 3,500천원

▶ 연간 교육 계획 (※ 마포구소속 공무원 현원 1,489명 기준)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교육목표 인원	497명	496명	496명
교육 횟수(1회 50명)	10회	10회	10회

- 소요예산 19,100천원을 2017년 예산에 추가편성예정임

관 계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67호, 2015.6.22., 타법개정]

-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 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